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
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12
----------	-----

2009년 6월 25일  
교통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6월 11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15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(2009년 6월 25일 상정  
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2008. 3. 28. 일부개정 되어 2008.  
7. 14.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법제처의 알기  
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인용조문 변경 반영(안 제2조제2호, 제3호, 제5호마목, 제7호, 안  
제3조 제1호내지제6호)
- 기타 법제처 "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"에 맞게 개정함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안석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2008. 3. 28. 일부  
개정 되어 2008. 7. 14.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 
상위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조문간 위치를 상위법  
체계를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정비 차원  
에서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 
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의안  
번호  
912

제출년월일 : 2009년 6월1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# 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는 한편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09.4.9. ~ 4.29.) 결과 : 별첨

(3) 규제심사 대상 : 규제사무 없음

(4) 이 조례안 중 “진하게 표시한 부분”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,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.

##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,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운수사업자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
2. 운송사업자 :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
3. 운수종사자 :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
4. 법인택시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
5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가.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
  - 나.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·운영하는 행위
  - 다. 신규 택시운전자역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
  - 라.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,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도록 하는 행위
  - 마.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**법 제12조**를 위반한 행위
  - 6. 개인택시 : 영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  - 7. 개인택시 3부제 :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행하는 운영형태
  - 8.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: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행위
  - 9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: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

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

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,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자로 한다.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1. 무면허 개인택시 : **법 제4조** 위반
2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: **법 제12조** 위반
3.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: **법 제12조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」 제21조** 위반
4. 개인택시 불법양도·양수 : **법 제14조** 위반
5.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: **법 제23조제1항제9호** 위반
6. 개인택시 3부제 위반 : **법 제23조제1항제9호** 위반
7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: **법 제23조제1항제9호** 위반
8.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. 다만,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
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금 지급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

2.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

3.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,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

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6조(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)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·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신고인의 성명·주소와 전화번호

2. 피신고인의 성명·주소 또는 업체명·차량번호 등

3.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(장소, 시간 등)

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신고인의 보호)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신고·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·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환수)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

[별표]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(제4조 관련)

위반 행위별	포상금액(원)	비 고
1. 무면허 개인택시	1,000,000	
2.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	2,000,000	
3.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	1,000,000	
4. 개인택시 불법양도·양수	1,000,000	
5.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	1,000,000	
6. 개인택시 3부제 위반	200,000	
7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	10,000,000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	
8.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	2,000,000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	

현 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,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,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운수사업자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	1. 운수사업자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
2. 운송사업자 :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	2. 운송사업자 :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
3. 운수종사자 :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	3. 운수종사자 :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
4. 법인택시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	4. 법인택시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5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	5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

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

나.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·운영하는 행위

다.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

라.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,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 토록 하는 행위

마.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블 때 명백히 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

6. 개인택시 :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
7. 개인택시 3부제 :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

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

나.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·운영하는 행위

다.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

라.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,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 토록 하는 행위

마.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블 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

6. 개인택시 :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
7. 개인택시 3부제 :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

로 1개조씩 운행하는 운영형태

8.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: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지하는 행위

9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: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

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,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.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1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: 법 제13조의 규정 위반

2.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: 법 제24조제1항 제9호의 규정 위반

3.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: 법 제13조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 규정 위반

4. 개인택시 3부제 위반 : 법 제24조

#### 제1항 제9호의 규정 위반

5. 개인택시 불법양도 양수 : 법 제1조의 규정 위반

6. 무면허 개인택시 : 법 제5조의 규정 위반

7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: 법 제24조제1항 제9호의 규정 위반

8.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. 다만,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제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금 지급 제외) 다음 각 호의

#### 4조 위반

5. 개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: 법 제23조제1항 제9호 위반

6. 개인택시 3부제 위반 :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반

7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: 법 제23조제1항 제9호 위반

8.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. 다만,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제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
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금 지급 제외)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1.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

2.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

3.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,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

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

2.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

3.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,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

제6조(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)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·우편·전화·팩스·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신고인의 성명·주소와 전화번호

2. 피신고인의 성명·주소 또는 업체명·차량번호 등

3.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(장소, 시간 등)

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)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·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신고인의 성명·주소와 전화번호

2. 피신고인의 성명·주소 또는 업체명·차량번호 등

3.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(장소, 시간 등)

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신고인의 보호)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신고·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7조(신고인의 보호)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신고·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과 신고를 접수·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.

제8조(환수)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.

과 신고를 접수·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환수)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.